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의 변경에 대한 예고

1. 시행세칙의 명칭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①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를 보임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RBC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

② 보험회사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익분석기준 개선

-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과징금, 기부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익분석 기준을 개선할 필요

③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

- 투자손익의 계정별·상품별 배분기준 명확화를 통해 상품별 손익 및 계약자배당 산출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

④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상 분류기준 개선

- 현행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 운전자보험* 등의 상품 개발시 불필요한 담보를 추가토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

3. 규정 변경 내용

① 보험회사 RBC제도 개선(안 별표22)

- 환위험을 시장위험액에서 별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채권 듀레이션 인정기준*을 완화

* 헤지기간까지의 듀레이션을 인정, 미헤지시 듀레이션 '0' 적용

- 해외채권에 대해서 1년 이상 헤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외채권의 잔존만기 듀레이션을 인정

- 정부가 SOC*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전액(100%) 보증하거나, 사업 헤지시 대출원금을 보증하는 경우는 무위험 적용

* 현행은 대출원금 보증시 무위험으로 적용하는 근거는 없음

- 또한, 정부가 일부 사업에 대하여만 결손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익스포저에 한하여 위험계수를 0%로 적용토록 명확화

* 현행은 일부 결손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0.8% 위험계수를 적용

②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익분석기준 개선(안 별표4, 별표16, 별표17)

-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토록 하고, 손익배분시 자본계정으로 배분하여 주주가 관련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개선

③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안 별표16)

- 투자손익 중 주주지분 배분을 위한 자본계정운용손익 산출 기준을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손익의 상품별 배분비율 산출기준을 보다 명확히 개선*

* 투자손익의 보험상품별 배분비율 산출시 책임준비금 공제금액에서 위험 관련 지급준비금 제외

④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상 분류기준 개선(안 별표14)

- 분류기준에 '장기손해보험 중 비용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장(장기비용)'을 신설하여,
 - 계약자가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불필요한 담보**를 추가하지 않고 장기비용이 주계약인 상품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 과태료, 소송비용 등

* 장기상해(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보장), 장기화재(장기 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에 생긴 손해보장) 등

⑤ 기 타(안 별표7, 별표18, 별지26, 별지34)

- 보험업법시행령(§61) 개정으로 보험회사 결산월이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 변액보험 최저보증비용 산출과 관련된 심사대상은 위험률 등 보험계리적 요소가 아니라, 할인율 등의 경제적 요소이므로 '할인율, 투자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의 하위항목으로 재분류
- 보험상품 신고서식 중 회사자체 점검항목에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추가하는 등 보다 구체화

- 보험종목별·판매채널별로 유지율을 세분화하고 보험계약기간 (최대 7년)까지 기간별 유지율을 산출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
-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일부 양식의 변경, 통합 및 신설을 검토
 - ① 기간별 재보험 미수금 현황, 주요거래선에 대한 재보험 출재 및 신용등급 투자부적격 재보험사에 대한 출재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의 양식을 정비하고
 - ② ERD 인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특약재보험 출재현황 양식을 신설

4. 기타 필요사항

☐ 없음

5. 의견 제출관련사항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의견제출의 근거	

※ 의견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13년 7월 28일(일)

6. 접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개정내용	접수부서	담당자	연락처	
자산운용 규제완화 관련 RBC 개선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송상욱 선임조사역	전화	3145-7481
			팩스	3145-7489
		강수원 조사역	메일	compec@fss.or.kr
			전화	3145-7483
보험계약 유지율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김동식 선임조사역	팩스	3145-7489
			메일	kameron20@fss.or.kr
			전화	3145-7473
			팩스	3145-7489
재보험거래 관련 업무보고서 양식변경	보험감독국 (IAIS팀)	이동훈 수석조사역	메일	dskim@fss.or.kr
			전화	3145-7463
			팩스	3145-7489
			메일	dhlee@fss.or.kr
보험회사의 과징금·기부금의 회계처리기준 등 개선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상품총괄팀)	수석조사역 박지선	전화	3145-8235
			팩스	3145-8258
		선임조사역 박경국	메일	sh.park@fss.or.kr
			전화	3145-8236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 및 기타	보험상품감독국 (생명보험팀)	수석조사역 김호균	팩스	3145-8258
			메일	kgpark@fss.or.kr
			전화	3145-8229
			팩스	3145-8258
보험상품 심사기준 및 신고서식 관련	보험상품감독국 (생명보험팀)	조사역 박지혜	메일	hokyunkim@fss.or.kr
			전화	3145-8226
		수석조사역 김우택	팩스	3145-8258
			메일	parkih@fss.or.kr
장기손해보험상품의 분류기준 개선	보험상품감독국 (손해보험팀)	수석조사역 김우택	전화	3145-8244
			팩스	3145-8258
			메일	wtkim@fss.or.kr

[참 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① 자산운용규제 완화 관련 RBC제도 개선 (별표 13, 22)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2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제3장 금리위험액 3-1. (금리위험액 산출방법) 가. (생략) (1) 금리위험액은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과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의 차이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금리위험액} = \text{금리부자산금리민감액} - \text{보험부채금리민감액}$ (이하 생략)	[별표 2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제3장 금리위험액 3-1. (금리위험액 산출방법) 가. (현행과 같음) (1) 만기불일치위험액----- ----- -----. $\text{만기불일치위험액} = \text{금리부자산금리민감액} - \text{보험부채금리민감액}$ (이하 생략)	용어의 명 확화 용어의 명 확화
3-3. 금리부자산 금리민감도 마. (생략) (1) 감독규정 별표 9 “4. 한도규제예외 파생금융거래” 가목의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는 채권평가기관이 헤지수단의 원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헤지된 기간중 잔존기간을 만기	3-3. 금리부자산 금리민감도 마. (현행과 같음) (1) 감독규정 별표 9 “4. 한도규제예외 파생금융거래” 가목의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는 채권평가기관이 해당 통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잔존기간을 만기로 하여 바.에 의해 산출한	

로 하여 바.에 의해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단서 신설>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단, 헤지수단의 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헤지수단의 원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한다.	1년이상 헤지할 경우 만기까지의 듀레이션을 활용 가능
4-8. (특수금융 위험계수) (생략) 가. 사회기반시설금융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부가 현금흐름을 전액 보증하는 경우에는 위험계수를 0%로 한다.	4-8. (특수금융 위험계수) (현행과 같음) 가. ----- -----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운영수입 등 사업 현금흐름을 전액(100%) 보증하는 경우 및 실시협약해지로 인한 최저 해지시지급금으로 투융자금액을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는 위험계수를 0%로 한다. (단, 연체 중인 경우는 제외)	SOC에 대한 위험계수 적용방식 명확화
4-12.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험계수) 나.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신 설>	4-12.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험계수)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일부 사업에 대하여만 결손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익스포저에 한하여 위험계수를 0%로 한다. 다만, 보유 익스포저가 결손보전 대상 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익스포저를 전 회계연도말 총자산 대비 결손보전 대상 사업의 비중으로 배분하여 위험계수를 0%로 적용할 수 있다.	부분결손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위험계수 적용기준 변경
<신 설>	부칙(2013.○.○.) 이 세칙은 2013.○.○.부터 적용한다.	

②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개선(별표4, 16, 17)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생명보험> 2. 손익계산서 (개별(별도)재무제표) <table><tr><th>계정과목</th><th>과목해설 및 작성방법</th></tr><tr><td>2. 영업외비용</td><td></td></tr><tr><td>아. 재해손실</td><td>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td></tr><tr><td colspan="2"><u><신설></u></td></tr><tr><td>자. 잡손실</td><td>상기이외의 기타비용</td></tr></table> 4. 연결손익계산서 <table><tr><th>계정과목</th><th>과목해설 및 작성방법</th></tr><tr><td>2. 영업외비용</td><td></td></tr><tr><td>아. 재해손실</td><td>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td></tr><tr><td colspan="2"><u><신설></u></td></tr><tr><td>자. 잡손실</td><td>상기이외의 기타비용</td></tr></table>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2. 영업외비용		아.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u><신설></u>		자. 잡손실	상기이외의 기타비용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2. 영업외비용		아.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u><신설></u>		자. 잡손실	상기이외의 기타비용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생명보험> 2. 손익계산서 (개별(별도)재무제표) <table><tr><th>계정과목</th><th>과목해설 및 작성방법</th></tr><tr><td>2. 영업외비용</td><td></td></tr><tr><td>아. -----</td><td>-----</td></tr><tr><td>자.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td><td>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td></tr><tr><td>차. -----</td><td>-----</td></tr></table> 4. 연결손익계산서 <table><tr><th>계정과목</th><th>과목해설 및 작성방법</th></tr><tr><td>2. 영업외비용</td><td></td></tr><tr><td>아. -----</td><td>-----</td></tr><tr><td>자.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td><td>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td></tr><tr><td>차. -----</td><td>-----</td></tr></table>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2. 영업외비용		아. -----	-----	자.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차. -----	-----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2. 영업외비용		아. -----	-----	자.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차. -----	-----	과징금 등의 영업외비용 처리를 명확화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2. 영업외비용																																										
아.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u><신설></u>																																										
자. 잡손실	상기이외의 기타비용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2. 영업외비용																																										
아.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u><신설></u>																																										
자. 잡손실	상기이외의 기타비용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2. 영업외비용																																										
아. -----	-----																																									
자.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차. -----	-----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2. 영업외비용																																										
아. -----	-----																																									
자.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차. -----	-----																																									
<손해보험> 2. 손익계산서 (개별(별도)재무제표) <table><tr><th>계정과목</th><th>과목해설 및 작성방법</th></tr><tr><td>XIII. 영업외비용</td><td></td></tr><tr><td>9. 재해손실</td><td>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td></tr><tr><td colspan="2"><u><신설></u></td></tr><tr><td>10. 영업외잡손실</td><td>(생략)</td></tr></table>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XIII. 영업외비용		9.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u><신설></u>		10. 영업외잡손실	(생략)	<손해보험> 2. 손익계산서 (개별(별도)재무제표) <table><tr><th>계정과목</th><th>과목해설 및 작성방법</th></tr><tr><td>XIII. 영업외비용</td><td></td></tr><tr><td>9. -----</td><td>-----</td></tr><tr><td>10.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td><td>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td></tr><tr><td>11. 영업외잡손실</td><td>(현행과 같음)</td></tr></table>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XIII. 영업외비용		9. -----	-----	10.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11. 영업외잡손실	(현행과 같음)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XIII. 영업외비용																																										
9.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u><신설></u>																																										
10. 영업외잡손실	(생략)																																									
계정과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XIII. 영업외비용																																										
9. -----	-----																																									
10.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11. 영업외잡손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 정(안)	비 고																																				
4. 연결손익계산서 <table><tr><th>계 정 과 목</th><th>과목해설 및 작성방법</th></tr><tr><td>XIII. 영업외비용</td><td></td></tr><tr><td>9. 재해손실</td><td>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td></tr><tr><td colspan="2"><신 설></td></tr><tr><td>10. 영업외잡손실</td><td>(생략)</td></tr></table> <부표1> 일반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table><tr><th>계정과목</th><th>과 목 해 설</th></tr><tr><td>세금과공과</td><td>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국민연금 등), 과징금 및 벌과금</td></tr></table> <부표3> 자산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table><tr><th>계정과목</th><th>과 목 해 설</th></tr><tr><td>세금과공과</td><td>운용자산관리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 과징금 및 벌과금 등</td></tr></table>	계 정 과 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XIII. 영업외비용		9.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신 설>		10. 영업외잡손실	(생략)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세금과공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국민연금 등), 과징금 및 벌과금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세금과공과	운용자산관리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 과징금 및 벌과금 등	4. 연결손익계산서 <table><tr><th>계 정 과 목</th><th>과목해설 및 작성방법</th></tr><tr><td>XIII. 영업외비용</td><td></td></tr><tr><td>9. -----</td><td>-----</td></tr><tr><td>10.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td><td>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td></tr><tr><td>11. 영업외잡손실</td><td>(현행과 같음)</td></tr></table> <부표1> 일반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table><tr><th>계정과목</th><th>과 목 해 설</th></tr><tr><td>세금과공과</td><td>----- ----- 공과금, 국민연금 등</td></tr></table> <부표3> 자산관리비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 <table><tr><th>계정과목</th><th>과 목 해 설</th></tr><tr><td>세금과공과</td><td>----- ----- ----- ----- 등</td></tr></table>	계 정 과 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XIII. 영업외비용		9. -----	-----	10.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11. 영업외잡손실	(현행과 같음)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세금과공과	----- ----- 공과금, 국민연금 등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세금과공과	----- ----- ----- ----- 등	-일반관리비 및 자산관리비 계정과목에서 과징금 등 제외 -과징금 등을 자본계정운용손익에서 차감
계 정 과 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XIII. 영업외비용																																						
9. 재해손실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및 제 손실의 가액																																					
<신 설>																																						
10. 영업외잡손실	(생략)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세금과공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국민연금 등), 과징금 및 벌과금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세금과공과	운용자산관리와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 과징금 및 벌과금 등																																					
계 정 과 목	과목해설 및 작성방법																																					
XIII. 영업외비용																																						
9. -----	-----																																					
10. 과징금·과태료·벌과금 등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액																																					
11. 영업외잡손실	(현행과 같음)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세금과공과	----- ----- 공과금, 국민연금 등																																					
계정과목	과 목 해 설																																					
세금과공과	----- ----- ----- ----- 등																																					
[별표16] 손익분석기준 다. 기타손익 기타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직접 배분한다. 다만, 발생원천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입보험료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단서 신설>	[별표16] 손익분석기준 다. 기타손익 ----- 하되, ----- ----- 다만,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 받은 금전상의 제재금과 기부금 등의 비용은 자본계정운용손익에서 차감한다.																																					
[별표17] 실제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의 계상기준	[별표17] 실제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의 계상기준																																					

현 행	개 정(안)	비 고												
<부표1> 생명보험의 실제사업비 항목별 배분기준표 2. 유지비 배분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th>1차 배분</th><th>2차 배분</th></tr> </thead> <tbody> <tr> <td>회 의 비 소 모 품 비 조사연구비 체육진흥비^{주1)} 세금과공과 협 회 비</td><td>귀속 불가 능</td><td>(생략)</td></tr> </tbody> </table> 주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납부한 세금, 공과금 및 과징금	항 목	1차 배분	2차 배분	회 의 비 소 모 품 비 조사연구비 체육진흥비 ^{주1)} 세금과공과 협 회 비	귀속 불가 능	(생략)	<부표1> 생명보험의 실제사업비 항목별 배분기준표 2. 유지비 배분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th>1차 배분</th><th>2차 배분</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 </tbody> </table> 주1) ----- -----공과금 등	항 목	1차 배분	2차 배분	(현행과 같음)			-실제사 업비 항목에서 과징금 등 제외
항 목	1차 배분	2차 배분												
회 의 비 소 모 품 비 조사연구비 체육진흥비 ^{주1)} 세금과공과 협 회 비	귀속 불가 능	(생략)												
항 목	1차 배분	2차 배분												
(현행과 같음)														

③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별표16)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16] 손익분석기준 나. 투자손익 (2)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손익 배분 (가) 자본계정운용손익은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처리한다. ○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손익 × (자본계정금액^{주1)} - 재평가적립금 처리후잔여액^{주2)}^{주3)} / (자산총계^{주4)} - 미상각신계약비)^{주3)} 주1) 자본계정금액은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한 금	[별표16] 손익분석기준 나. 투자손익 (2)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손익 배분 (가) ----- ----- ----- ○ ----- ----- ----- ----- 주1) ----- -----	

현행	개정(안)	비고
액으로 하며 <u>자본계정운용손익이 부치인</u> 경우는 “0”으로 처리한다. 주2)~주4) (생략)	-----, “자본계정금액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이 부치인 경우 자본계정운용손익을 “0”으로 처리한다. 주2)~주4) (현행과 같음)	-자본계정에서 투자손실도 부담토록 개선
(나) 책임준비금해당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보험상품별로 배분하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배분한다. ○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잔여액×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평균책임준비금 * 평균책임준비금 = (기초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주5)} + 기말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주5)}/(2+평균적립이율^{주6)}) 주5)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은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위험관련 지급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 및 출재보험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 ----- ----- ----- ----- ----- ----- ○ ----- ----- ----- * 평균책임준비금 = (기초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주5)} + 기말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주5)}/(2+평균적립이율^{주6)}) 주5) ----- ----- <u>미상각신계약비, 재보험료적립금</u>----- ----- -----	-공제대상에서 위험관련 지급준비금 제외

4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상 분류기준 개선(별표14)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table border="1"> <thead> <tr> <th>대 분류</th><th>중 분류</th><th>분 류 기 준</th></tr> </thead> <tbody> <tr> <td></td><td>장기 화재</td><td>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에 생긴 손해 보장</td></tr> <tr> <td></td><td>장기 종합</td><td>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td></tr> <tr> <td></td><td>장기 상해</td><td>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보장</td></tr> <tr> <td>장기</td><td>장기 질병</td><td>장기손해보험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 보장</td></tr> <tr> <td></td><td>장기 간병</td><td>장기손해보험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 보장</td></tr> <tr> <td></td><td colspan="2"><신 설></td></tr> <tr> <td></td><td>장기 기타</td><td>상해, 질병, 간병 보장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td></tr> </tbody> </table>	대 분류	중 분류	분 류 기 준		장기 화재	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에 생긴 손해 보장		장기 종합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장기 상해	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	장기 질병	장기손해보험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 보장		장기 간병	장기손해보험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 보장		<신 설>			장기 기타	상해, 질병, 간병 보장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table border="1"> <thead> <tr> <th>대 분류</th><th>중 분류</th><th>분 류 기 준</th></tr> </thead> <tbody> <tr> <td></td><td>장기 화재</td><td>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 에 생긴 손해 보장</td></tr> <tr> <td></td><td>장기 종합</td><td>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td></tr> <tr> <td></td><td>장기 상해</td><td>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보장</td></tr> <tr> <td>장기</td><td>장기 질병</td><td>장기손해보험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 보장</td></tr> <tr> <td></td><td>장기 간병</td><td>장기손해보험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 보장</td></tr> <tr> <td></td><td>장기 비용</td><td>장기손해보험 중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td></tr> <tr> <td></td><td>장기 기타</td><td>상해, 질병, 간병 보장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td></tr> </tbody> </table>	대 분류	중 분류	분 류 기 준		장기 화재	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 에 생긴 손해 보장		장기 종합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장기 상해	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	장기 질병	장기손해보험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 보장		장기 간병	장기손해보험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 비용	장기손해보험 중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		장기 기타	상해, 질병, 간병 보장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장기 종합에 비용으로 인한 손해추가 -장기비용 항목추가
대 분류	중 분류	분 류 기 준																																																
	장기 화재	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에 생긴 손해 보장																																																
	장기 종합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장기 상해	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	장기 질병	장기손해보험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 보장																																																
	장기 간병	장기손해보험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 보장																																																
	<신 설>																																																	
	장기 기타	상해, 질병, 간병 보장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대 분류	중 분류	분 류 기 준																																																
	장기 화재	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 에 생긴 손해 보장																																																
	장기 종합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장기 상해	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	장기 질병	장기손해보험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 보장																																																
	장기 간병	장기손해보험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 비용	장기손해보험 중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																																																
	장기 기타	상해, 질병, 간병 보장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5 기타 (별표7, 별표18, 별지26, 별지34)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7]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 6. 추산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마. 선임계리사는 개별추산금액의 변동추이를 분기별로 분석·검증하여야 하고, <u>결산전 CY기준</u>으로 개별추산금액을 검증한 결과 개별추산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FY결산시까지 지급준비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7]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 6. ----- 마.----- ----- 1년이상 분기별로 ----- ----- 결산 3개월전 기준 ----- ----- 결산시 ----- ----- 까지 지급준비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결산월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18] 보험상품 심사기준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나. (생략) 다. 최적위험률에 관한 사항 - <u>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u> 라~마. (생략) 바. 투자수익률 및 <u>할인율에 관한 사항</u> (생략) <u><신 설></u>	[별표18] 보험상품 심사기준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최적위험률에 관한 사항 <u><삭 제></u> 라~마. (현행과 같음) 바. 투자수익률 및 <u>할인율 등에 관한 사항</u> (현행과 같음) - <u>변액보험 최저보증에 관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u>	-변액보험 최저보증 비용 심사기준 정비
[별지 26호] 업무보고서  <u><첨부1> 참조</u>	[별지 26호] 업무보고서  <u><첨부1> 참조</u>	
[별지34] 보험상품 신고서 9. 관련 규정과의 부합여부 가. 약관 표현 및 체제 ○ 표준약관 준용 여부 ○ 약관 표현의 명확성 및 분쟁유발 가능성, 약관규정 체제의 명료성, 기존 유사상품의 약관과의 비교 나~라. (생략)	[별지34] 보험상품 신고서 9. 관련 규정과의 부합여부 가. 약관 표현 및 체제 ○ 표준약관 준용 여부 ○ 약관 표현의 명확성 및 분쟁유발 가능성, 약관규정 체제의 명료성, 기존 유사상품의 약관과의 비교, <u>계약자 등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 의 유무</u> 나~라. (현행과 같음)	-약관에 대한 자체심 사의무 강화

<첨부1>

13회차 및 25회차 계약유지율 (생명보험, 손해보험_AH112,AH113,AI112,AI113)

현 행

산출월	전속설계사가 모집한 계약			교차설계사가 모집한 계약			합계		
	산출월 기준 전(전)년 동월대상 신계약액 (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 계약액 (B)	13회차 계약 유지율 (B/A) ×100	산출월 기준 전(전)년 동월대상 신계약액 (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 계약액 (B)	13회차 계약 유지율 (B/A) ×100	산출월 기준 전(전)년 동월대상 신계약액 (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 계약액 (B)	13회차 계약 유지율 (B/A) ×100
4월									
5월									
6월									
7월									
(중략)									
익년 2월									
익년 3월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합계									

(AH112, AH113 작성요령)

1.~2.(생략)

3. (신설)

(AI112, AI113 작성요령)

1).~2).(생략)

3). (신설)

개 정(안)

표(AH113·AI113을 삭제하고 변경된 AH112·AI112로 통합)

보험 종목	판매 채널		계약액	13회차				25회차				(중략)	85회차							
				1월 (중략)	12월 (중략)	합계	1월 (중략)	12월 (중략)	합계	(중략)	1월 (중략)	12월 (중략)	합계							
(생명 보험) 생존 보험 (손해 보험) 상해	설 계 사	전속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교차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소계	계약유지율(B/A)×100																	
	개 인 대 리 점	전속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비전속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소계	계약유지율(B/A)×100																	
	법 인 대 리 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계약유지율(B/A)×100																	
		TM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계약유지율(B/A)×100																	
		홀쇼핑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계약유지율(B/A)×100																	
		기타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계약유지율(B/A)×100																	
		소계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계약유지율(B/A)×100																	
	직 영	복합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계약유지율(B/A)×100																	
		다이렉트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계약유지율(B/A)×100																	
		소계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계약유지율(B/A)×100																	
	계	산출월 기준 각회차별 이전년도 동월대상 신계약액(A)																		
		(A)중 산출월 현재 유지계약액(B)																		
		계약유지율(B/A)×100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개 정(안)

(AH112 작성요령)

1.~2.(현행과 동일)

3. 보험종목 : "보험료수입 현황(AH066)"에 따른 구분

-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 보장성(금리확정형), 보장성(금리연동형), 저축성(금리확정형), 저축성(금리연동형)

(AI112 작성요령)

1).~2).(현행과 동일)

3). 보험종목 : "사업실적표 현황(AI059)"에 따른 구분

-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저축성, 통합형보험, 개인연금, 자산연계형, 퇴직보험, 퇴직연금
- 장기보장성(금리확정형), 장기보장성(금리연동형), 장기저축성(금리확정형), 장기저축성(금리연동형)